

# 변경대비표(일반 및 자펀드)

## 1. 대상 펀드:

no	펀드명	투자전략 문구추가	환매수수료 삭제	결산	변동성	변경사항
1	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5), 8)
2	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○	-	○	○	5), 7), 8)
3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5), 8)
4	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)	-	○	○	○	5), 6), 7), 8)
5	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투자신탁1호(UH)(채권)	-	-	○	○	5), 8)
6	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투자신탁1호(파생재간접형)	-	-	○	○	5), 8)
7	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투자신탁(파생재간접형)	-	-	○	○	-
8	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○	○	5), 8)
9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-
10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-	-	○	○	-
11	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-	-	○	○	-
12	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-	-	○	○	5), 8)
13	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	-	-	○	○	-

## 2. 변경 사항:

- 1) 투자전략 문구 추가
- 2) 환매수수료 삭제
- 3)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
- 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- 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- 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- 7) 법 개정사항 반영
- 8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## 3. 효력발생예정일: 2022년 10월 27일 (목)

## 4. 변경 내용:

- 1) 투자전략 문구 추가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[요약정보]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	2. 투자전략 <중략>	2. 투자전략 <중략>

	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	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<b>다만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중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에는 순자산총액의 5% 이내로 투자 합니다.</b>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제 2 부. 9. 가. (1) 투자전략(운용전략 및 투자방침)	<중략>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	<중략> ③ 운용 전략상 투자 한도 내에서 수익증권 등 기타 증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, <b>다만 국내증권시장에 상장된 ETF 중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에는 순자산총액의 5% 이내로 투자 합니다.</b> 또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채권의 실질편입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

2) 환매수수료 삭제

-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9조 (환매수수료)	<p>①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 (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 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, 이하 본 항에서 '이익금'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종류C 수익증권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종류C-e 수익증권 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p> <p>3. 종류F 수익증권</p>	<p>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p>

	<u>9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</u>	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<환매수수료>	[ C, C-e, F ] 90 일 미만 : 이익금의 70%	환매수수료 없음

4)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

펀드명	변경 전 등급	변경 후 등급	변경 전(%)	변경 후(%)
미래에셋가치주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29.41</u>	<u>27.41</u>
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3	3	<u>10.92</u>	<u>10.95</u>
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)	2	2	<u>21.6</u>	<u>21.17</u>
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)	5	5	<u>2.65</u>	<u>4.13</u>
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탁1호(UH)(채권)	4	4	<u>7.45</u>	<u>7.7</u>
미래에셋미국리츠부동산자투자신탁1호(파생재간접형)	1	1	<u>29.75</u>	<u>31.08</u>
미래에셋미국리츠안정배분혼합자산자투자신탁(파생재간접형)	3	3	<u>13.07</u>	<u>13.83</u>
미래에셋배당프리미엄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2	2	<u>18.81</u>	<u>18.78</u>
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3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4	4	<u>7.34</u>	<u>8.51</u>
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50증권자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3	3	<u>10.59</u>	<u>12.22</u>
미래에셋베스트솔루션70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	<u>3</u>	<u>2</u>	<u>14.07</u>	<u>16.19</u>
미래에셋연금브라질업종대표증권자투자신탁1호(주식)	1	1	<u>33.26</u>	<u>34.63</u>
미래에셋퇴직연금미국리츠40증권자투자신탁(채권혼합-파생형)	3	3	<u>12.08</u>	<u>12.83</u>

5)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문구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. 12. 나.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(1) 평가방법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 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	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 시가( <u>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 시가</u> ) 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( <u>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</u> )

	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<u>집합 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</u> .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	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( <u>외국집합 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</u> ) 다만,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( <u>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</u> )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6)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조(용어의 정의)	<신설>	- “고난도금융투자상품”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
제53조(고난도금융투자상품)	<신설>	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	<신설>	바.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: 해당 사항 없음

7) 법 개정사항 반영

[집합투자규약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13조(자산운용지시 등)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<u>투자신탁재산으로</u>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<u>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</u>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. 다만,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42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

	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②~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2부 8. 가. 투자대상	<p>-채권</p> <p>&lt;중략&gt;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/p> <p>&lt;생략&gt;</p> <p>-자산유동화증권</p> <p>&lt;중략&gt;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/p> <p>&lt;생략&gt;</p>	<삭제>
제2부 8. 나. 투자제한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</p> <p>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나. &lt;중략&gt;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</u></p> <p>&lt;중략&gt;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&lt;생략&gt;</u></p>	<p>-동일종목투자 (예외)</p> <p>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%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</p> <p>나. &lt;삭제&gt;</p>

8) 이해관계인 삭제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[투자설명서]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부 1. 가. 회사의 개요	<p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</p> <p>- <u>일반사무관리회사 :</u></p> <p>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</u></p>	<p>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 중 집합투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</p> <p>&lt;삭제&gt;</p>
제4부 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<p>회사명: <u>미래에셋펀드서비스(주)</u></p>	<p>회사명: <u>한국펀드파트너스(주)</u></p>

# 미래에셋자산운용(주)